

종합감사

감사보고서

- 2024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종합감사 -
(서울, 세종, 경남 3개 센터)

2025. 1.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

목 차

I . 감사 실시 개요		1
II . 감사 결과		
1. 외부강의 등 복무 관리 부적정		2
2. 공무국외여행 규칙 임의 폐지		6
3. 자산관리 부실		8
4. 기부금 수의계약 처리 부적정		13
5. 수의계약 분할발주 등 부적정		15
6. 승진 인사 운영 부적정		18
7. 평가위원 위촉 부적정		20
8. 지원사업 선정평가 업무 처리 부적정		22
9. 사업 전담 인력 운용 부적정		24
10. 기타 감사 지적 사항		26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경센터”라고 한다)의 조직 운영 및 복무 관리, 지역별 특화사업 운영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 운영의 건전성·효율성 및 업무 수행의 투명성·공정성 등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재)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서울창경센터”라 한다), (재)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세종창경센터”라 한다),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남창경센터”라 한다) 등 3개 창경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로 인사·예산·계약·복무·징계 등 기관 운영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발굴·육성 및 사업화·투자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 감사에 앞서 2024. 10. 7.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서면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같은 해 10. 14.부터 10. 18.까지 5일간 창경센터별 감사 인원 3명씩을 투입하여 관련 서류 검토와 담당자 면담 등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2024. 12. 10. 경남창경센터, 같은 해 12. 17. 서울창경센터, 같은 해 12. 18. 세종창경센터를 대상으로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내부 검토를 거쳐 2025. 1. 14.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 결과

Ⅱ-1

외부강의 등 복무 관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창경센터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및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하는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외부강의등 신고 및 승인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1)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경센터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르면 임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실시하는 경우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강의등을 실시할 때는 서울창경센터 「복무규정」 제16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연차휴가 또는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2)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경센터 「행동강령」 제18조의2에 따르면 임직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에 참석할 때는 요청자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요청자, 요청 사유, 대가 등을 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센터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창경센터 「행동강령」 제18조에 따르면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는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고, 요청 명세 등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외부강의등을 할 때는 경남창경센터 「복무규정」에 따라 임직원은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이탈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장 명령을 받아, 출장이 종료되면 출장증빙서류를 갖추어 여비 지급을 신청하고 센터는 출장자에 대해 출장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여비규칙」 제5조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여비경비가 지급되는 때에는 그 지급액만큼 여비 총액에서 감액 지급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1)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경센터 임직원의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외부강의등 신고내역을 점검한 결과, ☆☆☆ 팀장은 외부강의등 실시 후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등 미신고 1건, 복무규정에 따른 복무상황 미상신 6건 등 총 7건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경센터 임직원은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에 참석하면서 미리 신고하

지 않고 사후에 신고하거나,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 및 센터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지 않고 사후에 지연 신고한 현황은 10명, 58건이며, 최장 2년 이상(766일) 경과하고 신고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 9월 말까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사전 검토와 센터장의 사전 승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8명, 60건으로 확인되었다.

3)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창경센터 임직원의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외부강의등 복무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임직원 58명(중복 제외 시 18명)이 외부강의등 778건을 신고하였는데, 이 중 27명(46.6%, 중복 제외 시 8명)이 센터의 사전 승인 및 출장 명령 없이 외부강의등(93건, 12%)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 파트장은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이 교통비를 지급하였음에도 경남창경센터에 여비 지급을 신청하여 교통비를 이중으로 지급받거나, 외부강의등 신고 장소와 다른 출장지로 출장을 신청하여 교통비를 초과 지급받는 등 부당수령하였으며, 센터장에게 외부강의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 본부장은 2023년 11월에 7건의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면서 2023년 11월 16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월 3회를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4건에 대하여 센터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1)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 ① 외부강의등 신고를 누락하였거나, 출장 명령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실시한 관련자 (1명)에 대해 경고 등 조치하고, (개인경고)
- ② 앞으로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 및 출장 내역 확인 등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2)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 ①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및 승인을 누락한 관련자 (10명)에게 경고 등 조치하고, (개인경고 5명·개인주의 5명)
- ② 앞으로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및 승인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3)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 ① 출장 명령을 받지 않고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고 출장비를 이중 수령하는 등 복무를 위반한 관련자 (8명)에 대해서는 경고를 촉구하시기 바라고, (개인경고 2명·개인주의 6명)
- ② 출장비 부당 수령 금액을 환수하며, (시정요구)
- ③ 앞으로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 및 출장 내역 확인 등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1. 업무 개요

서울창경센터는 「여비규정」 및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서울창경센터는 2019년 8월 부패방지 시책의 일환으로 임직원의 부당 해외 출장 근절을 위해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공무국외여행 실시를 위해서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수립하여 외부 전문가가 3인 이상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서울창경센터 제규정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당한 사유 등 없이 임의로 제·개정 또는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서울창경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하지 못한 공무국외여행을 2023년 6월 재개하면서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센터장 전결로 폐지하였고, 해당 규칙을 폐지한 채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4건(7명)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내부결재로 추진하였다.

서울창경센터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한 사유로 당시 센터장이 임직원의 공무국외여행 횟수가 많지 않고, 외부 위원 없이 내부 결재권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으므로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라 지시함에 따른 것이라 설명하였다.

그러나 세종 및 경남 등 다른 창경센터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있어 서울창경센터가 외부위원 없이 내부 결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것이 기존 외부위원이 참여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는 것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국외여행 규칙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여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공무국외여행자의 연락유지 의무, 공무국외여행시 직무 관련 기밀누설 금지 의무,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규칙 전체를 폐지한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서울창경센터는 새로운 센터장 취임 이후 임의 폐지한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2024년 9월 다시 제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공무국외여행 규칙 등 제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 제정·개정·폐지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1. 업무 개요

창경센터는 운영 사업 및 위탁사업비 등에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여 기관 및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산을 구매하고 있으며, 자산 및 물품 관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자산 및 물품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1)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경센터 「회계규정」 제39조에 따르면 센터장은 자산관리를 위해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부 예산 및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자산취득비 등으로 구매한 물품은 자산(물품)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처분 시까지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2)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경센터는 「물품관리지침」 제5조에 따라 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물품의 현황 및 변동 사항을 파악 정리하여야 하며, 위 지침 제12조에 따라 채물 조사 시 발견된 물품의 증감 사항, 이상 상태 등을 명확하게 종합한 후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의 불용결정, 손·망실 처리, 매각 및 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관리지침」 제15조에 따라 불용결정 물품은 양여, 매각 및 폐기하여 처분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물품관

리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 전환, 양여, 매각,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나 변질·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해 폐기처분 할 수 있다.

한편, 세종창경센터 「물품관리지침」 제16조에 따르면 물품사용자는 관리·사용 중인 물품이 망실, 훼손 또는 관리상에 문제가 발생하면 물품사용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사용책임자는 손·망실 보고서를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사무용 집기류, SW 라이선스 구입 예산은 유형자산(자산취득비)으로 집행한다.

경남창경센터 「물품 관리 규칙」에 따르면 센터장 또는 물품 관련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이 지명하는 관계 직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취득할 수 없으며,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취득할 때마다 물품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물품관리대장에 즉시 등록하여야 하고, 물품관리담당은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1)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창경센터는 세종 및 경남 창경센터와 달리 자산의 취득·사용·불용·처분 등 자산관리에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관리할 기본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번 감사 기간 서울창경센터가 자산취득비로 구매한 물품이 자산등기대장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자산관리 현황에 대해 살펴본 결과,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자산등기대장에 등록을 누락한 건이 118개, 금액을 잘못 기재한 건이 28개, 동일 물품을 중복 등록하였거나 타 물품과 함께 중복 등록하여 삭제가 필요한 건이 38개, 자산등기대장에 물품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취득비로 구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물품도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이 서울창경센터는 자산관리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21년 12월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24년 10월 현재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구매 물품의 자산등록부터 내용연수 경과 등에 따른 처분(매각·양여·폐기) 등 전반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2)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경센터는 2019년 12월 29개 물품(취득가액 약 22백만원, 국고보조금) 및 2023년 3월 33개 물품(취득가액 약 51백만원, 세종시 출연금)을 관리부실로 망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12월 망실한 냉난방기, 음향장치 등 29개 물품은 세종창경센터가 2018년 9월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舊 세종창경센터 건물에 존치하였는데 舊 세종창경센터 입주 건물이 보건소 이전으로 개보수 및 증축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세종시가 공사 일정과 존치한 물품 처리를 요청('19.7월)하였으나, 당시 세종창경센터 물품사용책임자 ●●● 주임('19.12월 퇴사), 물품관리 책임자 ○○○ 팀장('20.7월 파견복귀)은 관리전환, 매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결국 '19년 12월 공사 과정에서 망실되었다.

세종창경센터는 물품 망실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0년 7월 물품·자산 현황조사 과정에서 발견하였고, 2020년 10월 서류상으로 29개 물품을 불용물품으로 정리하였으며, 망실에 따른 손·망실 보고서 또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종창경센터가 불용처리한 29개 물품은 망실 당시 모두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종창경센터가 2023년 3월 망실한 이동식 화장실, 컨테이너하우스 등 33개 물품은 세종창경센터가 운영하던 ‘두레농업타운’이 2023년 3월 철거되면서 함께 망실되었는데 ‘두레농업타운’ 철거가 예정되었음에도 당시 ‘두레농업타운’ 업무를 담당하던 물품사용자 ◇◇◇ 책임(‘23.7월 퇴사), 물품사용책임자 ◆◆◆ 전임, 물품관리책임자 □□□ 팀장은 ‘두레농업타운’에서 사용중인 물품에 대해 처리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세종창경센터는 2023년 9월에 실시한 물품·자산 현황조사에서 망실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1월 ‘2023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물품·자산 현황조사 결과보고’를 통해 불용물품으로 정리하였으며, 망실에 따른 손·망실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종창경센터가 불용처리한 33개 물품 중 28개 물품은 망실 당시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세종창경센터는 물품·자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9년 및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총 62개 물품(취득가액 약 73백만원)을 망실함에 따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3)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남창경센터의 자산 취득 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니터, 외장하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을 유형자산(자산취득비)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수용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였다.

또한 물품을 취득할 시 센터장 또는 물품 관련 사무를 위임받은 직원(경영지원팀)이 지명하는 관계 직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아야 함에도 물품 구매담당자가 직접 검사와 검수를 모두 수행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취득 물품을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하면서 매 회계 연도별 취득 자산에 대하여 물품명, 취득 일자, 모델명, 취득가 등에 관한 내용만 작성하

였고, 「물품 관리 규칙」 작성 서식에 따른 물품관리번호, 내용연수 등 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누락 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물품관리대장에 등재된 내역과 실물 물품과의 상태를 대조·확인하기 위한 재물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1)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예산 및 자원 낭비가 없도록 취득 자산의 등록, 재물조사 및 처분 등 관련 규정을 제정·운영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2)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① 2023년 세종두레농업타운 물품을 망실한 업무 관련자(2명)에게 경고를 촉구하시기 바라고, (개인경고)

② 「물품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망실한 물품에 대한 변상 등 적정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통보)

③ 앞으로 사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자산이 검토없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물품·자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3)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앞으로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자산취득비를 집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을 검사·검수하며, 물품관리대장을 등록하고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는 등 물품·자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1. 업무 개요

서울창경센터는 2015년 3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법인(前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아, 기부금을 접수하여 사용·관리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서울창경센터는 기부금 사용시 「기부금 관리지침」 제7조에 따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회계규정 제23조, 제3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수의계약 사유가 있어야 하며, 수의계약 시에는 회계규정 제3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서울창경센터는 기부금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일을 소급 적용하고, 수의계약 가능 업체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약 건별로 살펴보면, 우선 “■■■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홍보영상 제작 및 운영 대행 계약”의 경우, 서울창경센터는 주식회사 ■■■과 2019년 10월 14일 동 용역계약을 60,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당시 수의계약 사유서를 살펴보면 사업공고문에 ■■■와 공동 추진 사업으로 선정기업에 ■■■과 연계를 통한 후속 마케팅 지원이 명기되어 있어 제작업체 변경 시 민원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규정에 따라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홍보영상 제작 및 운영 대행을 실시할 수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약 700여개가 존재하는 점, 다음 해에 실시된 유사 용역이 다른 사업체를 통해 진행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수의계약사유서에 명시된 사업공고 및 업무협약서 등에 ■■■과 연계 지원 또는 업무협력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 계약 건의 경우 계약체결일은 2019년 10월 14일이나 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2019. 09. 10. ~ 2019. 11. 30.”까지로 먼저 과업을 선 진행한 후 사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정당한 계약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 홈 테크 브릿지 데이 운영 위탁 용역”의 경우 서울창경센터는 주식회사 ▲▲▲와 2022년 4월 13일 동 계약을 25,000,000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서울창경센터는 해당 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한다고 내부결재를 받아 진행하였다. 그러나 내부결재 당시 소기업확인서, 2인 이상의 비교견적서 등이 첨부되지 않아 수의계약 요건에 타당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내부결재를 진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서울창경센터는 용역계약 종료 후 행사비용 집행을 위해 내부결재를 진행(2022.6.23)하면서 계약 당시 누락한 수의계약 증빙서류(소기업확인서, 비교견적서)를 사후에 첨부하였으나, 증빙서류 역시 계약체결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적정한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조치할 사항】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앞으로 기부금 집행 시 회계규정과 달리 수의계약 요건에 위배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일을 소급 적용하고 증빙서류를 사후에 첨부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1. 업무 개요

창경센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국가계약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하여 그 낙찰금액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고, 최저견적서를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위의 집행기준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계약을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물량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조에 따르면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1)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창경센터는 2024년 기술신용평가(TCB) 및 기술가치평가 추진을 위해 2건의 용역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계약상대자가 서로 동일하며 과업 기간 및 지원 대상이 겹치고 총 계약금액이 2,8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일반경쟁으로 발주하거나, 먼저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과업 내용 변경을 통해 과업 범위를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상기 용역에 대하여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2건의 사업으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24.9.12, '24.10.11) 하였다.

2)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창경센터는 2024년 1월 6일부터 같은 해 1월 16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4' 참석을 위한 여행경비로 항공 경비, 숙박비 및 행사참가비 계 24,360,990원을 지급하였는데, 합계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업이 다르다는 사유로 통합하여 발주하지 않고 분할하여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경남창경센터는 투자프로그램 운영 관련 4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IR 컨설팅, 투자 강의, 투자상담회 등 유사한 내용의 과업 및 계약기간임에도 통합하여 공개경쟁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않고 사업이 다르다는 사유로 동일 업체와 분할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경남창경센터는 2023년 6월 12일부터 같은 해 6월 19일까지 6박 8일 동안 임직원 3명이 프랑스 파리 '벅스데이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운영 프랑스 VIVA Tech 행사 참석'을 위한 출장경비로 항공 경비, 숙박비 및 행사참가비 계

24,443,500원을 지급하였는데, 합계 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2개 업체와 동일 목적과 내용의 과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1)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앞으로 일반경쟁으로 계약하여야 할 용역계약 등을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무 관련자(2명)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

2)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앞으로 일반경쟁으로 계약하여야 할 용역계약 등을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무 관련자(2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

1. 업무 개요

서울창경센터는 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해 2020년 6월 10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승진규칙」(이하 “승진규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을 검토하여 승진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명의 직원을 승진 발령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11조 및 승진규칙 제3조에 따라 센터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직급별 승진대상자 명부”를 고려하여 최종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실적에 따라 승진 임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승진심사는 승진규칙 제6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월에 실시하여야 하며, 승진 직원에게는 승진규칙 제15조에 따라 기존 직급의 기본급에, 승진 직급에 해당하는 승진가산금을 합산하여 기본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울창경센터는 매년 1월 인사위원회 등 공정한 심사를 거쳐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승진자에게는 승진가산금을 승진 발령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서울창경센터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0명의 직원을 승진인사 발령하면서 승진발령일이 2020년은 6월(1명), 2021년은 9월(7명), 2022년과 2023년은 12월(각 1명)임에도 승진기준일을 해당연도의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여 승진자 10명에게 승진가산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승진가산금의 소급 지급 타당성 및 환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서울창경센터는 2015년 설립 이후 최초로 2020년 승진 인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직원별 경력산정, 직급부여, 직급 체류연한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확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심사를 위한 승진규칙 등을 마련(2020년 6월)함에 따라 승진 인사를 연초에 시행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6월에 실시하였다.

이에, 승진인사위원회는 승진 인사 지연이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승진기준일을 1월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0년 이후에도 센터장 교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 승진 발령이 1월에 실시되지 못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기준일을 1월 1일로 소급하여 승진가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승진발령일과 달리 승진기준일을 소급 적용하여 승진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난다고 할 것이나, 서울창경센터의 경영환경, 업무상황, 승진인사위원회의 의사결정 사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승진 심사를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승진 가산금을 수령한 근로자들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바 소급지급액의 환수는 걱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6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조 등에서도 공무원의 임용 일자리를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직유관단체인 서울창경센터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승진기준일을 소급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승진 인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① 승진 직급에 해당하는 승진가산금이 제도 취지에 맞게 승진발령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승진 인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통보)

② 앞으로 명확한 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진발령일과 달리 승진기준일을 소급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1. 업무 개요

세종창업센터는 성실한 실패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및 중장년 (예비) 재창업자를 발굴, 지원하여 재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의 2022년 주관기관으로 수혜기업 선정, 사업 운영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세종창업센터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22.6.16, 9차 개정)(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 및 「제도전성공패키지 세부관리기준(이하, “세부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통합관리지침 제11조제1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주관기관장은 창업기업의 선정평가, 기타 사업관리 등을 위해 주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를 심의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창업기업과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있는 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통합관리지침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평가 등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한 평가위원은 해촉하고,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이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위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세종창경센터(투자전략팀)는 2022. 11. 8. “시장 반응조사” 프로그램의 지원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위원 중 2명은 동일연도 특화 프로그램 중 BM아카데미, 맞춤형 멘토링에 컨설턴트·멘토로 각각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의 평가위원 2명이 직접 지원한 기업이 평가대상 기업에 포함되었으나, 당시 투자전략팀 ▽▽▽ 팀장과 창업성장지원본부 ▼▼▼ 본부장('23. 6월 퇴사)은 선정평가 추진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위원 중 제척사유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BM아카데미와 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지원한 이력이 있는 평가위원이 “시장 반응조사” 선정기업 평가에 참여하게 되었고, 평가결과 해당기업은 모두 선정되어 평가 공정성을 저해하였다.

【조치할 사항】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① 앞으로 평가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평가위원 위촉 업무를 철저히 하시고, 이해관계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한 업무 관련자(1명)에게 “경고”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경고)

②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 ♣♣♣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 업무 개요

세종창경센터는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이하 “희망리턴패키지”라 한다) 사업의 주관기관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으며,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대상(경영위기 소상공인) 선정 및 사업 운영,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2023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행하였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2023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 및 「2023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지원대상 2차 모집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에 따라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사업화’는 서류·발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별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발하며, 주관기관별 최종 선정인원의 20% 이내 차순위자를 선정하여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업무편람 및 공고에 따르면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사업화’의 정부 지원금은 최대 2천만원(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며 선정자의 최종 평가점수 및 사업화계획 적정성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세종창경센터는 2023년 2차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사업화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발표평가를 실시하면서 예비합격자 ◁◁◁(주식회사 ◀◀◀)의 점

수를 심사위원 1명이 잘못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데, 정정한 올바른 점수는 합격자 점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예비합격자 <<<은 최종 합격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최종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또한, 예비합격자 >>>(▶▶▶)의 경우 심사위원 1명의 점수가 80점이었으나 81점으로 잘못 산출하였는데 심사위원 5명의 점수 중 최고점에 해당되어 평균점수에 반영되지 않아 최종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합격자 중 일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비합격자 7명 중 5명은 합격자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전체 합격자에게 차등지원한 지원금의 분포는 상위 32%, 중위 29%, 하위 38%로 분포되어 있는데 상위권 비중이 중위권 비중보다 높아 상대평가를 통한 적절한 분포로 보기 어려웠다.

결국, 세종창경센터는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점수 산출 오류, 지원금 차등지원 불합리 등으로 합격자에 포함되어야 할 소상공인을 예비합격자로 분류하고, 동점자인 7명의 예비합격자 중 5명은 합격자에 포함시키고 2명은 불합격으로 처리하는 등 평가 및 선정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앞으로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등 중기부 수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대상 선정·평가에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1. 업무 개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고 한다)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고 한다) 등 전담기관이 창경센터, 대학 등을 주관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르면 전담인력은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사업을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 지침 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전담인력 인건비는 전담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전담인력에 한하여 지급가능하며, 전담인력은 해당 지원사업 이외의 타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소진공의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 수행기관 추가 모집 공고에 따르면 필수 자격요건으로 인력의 경우 사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100% 투입 전담인력(최소 2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3. 검토 결과 및 문제점

그런데 세종창경센터는 2022년의 경우 재도전성공패키지 전담인력 ♠♠♠에게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지원사업”을, 2023년의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사업 전담인력인 ♠♠♠에게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업무 등 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지원사업 전담인력이 타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전담인력이 해당 지원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타 업무를 겸직하여 수행하게 하여 사업관리, 운영 등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은

앞으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전담인력이 타 업무를 겸직하는 일이 없도록 전담인력 운용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요 구
1	출근 등 근무 상황 관리 부실 (서울·경남)	○(서울) '22~'24.6월까지 3회 이상의 근태 이상(출근 시간 미지정) 및 지각 등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후 조치 소홀	복무규정 위반자 적정 조치 방안 마련, (통보) 복무 및 인사 관리 업무 철저 (기관 경고)
		○(경남) '24.1~9월까지 직원 출퇴근 현황 점검 결과 출근 시간 미등록 등 복무 관리 소홀	근태 이상자 적정 조치 방안 마련, (통보) 복무 관리 업무 철저 (기관주의)
2	기부금 결산이사회 보고 및 공시의무 소홀 (서울)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결산이사회에 보고하고 4개월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나, 최근 5년간 결산이사회에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고, '19·'21·'22년은 기한을 초과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결산이사회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철저 (기관 경고)
3	공무국외여행 항공 마일리지 등 관리 부실 (서울·세종·경남)	○(서울) 항공 마일리지 미적립 및 공무국외여행 실시 후 30일 이내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 등에 미공개 (1건 공개)	공무국외여행 마일리지 적립 및 보고서 공개 철저 (기관주의)
		○(세종) 항공마일리지 적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국외출장 후 항공마일리지 미적립 및 공무국외여행 후 30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에도 미공개 또는 기한 초과 공개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 등에 관한 세부 규정 등 마련, (통보) 공무국외여행 마일리지 적립 및 보고서 공개 철저 (기관주의)
		○(경남) 항공마일리지 미적립, 적립 마일리지 활용 현황 미점검 등 관리부실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대한 사전 안내 등 업무 철저 (기관주의)
4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 (세종)	○행사에 소요 되는 식비·다과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수용비로 집행	예산 집행 기준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등 관련 업무 철저 (기관주의)
5	숙박비 상한액 초과 지급 증빙 부실 (경남)	○숙박비 상한액을 초과 (30% 한도)하여 지급 시 초과 지출 사유 등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정산 신청 및 지급해야 하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추가 지급	숙박비 초과 지출 사유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지급하는 등 여비 집행 관련 업무 철저 (기관주의)
6	업무용 공용차량 관리 미흡 (경남)	○차량내 하이패스 카드 이용기록과 차량 운행일지 불일치, 차량 이력카드, 이용 대장 및 급유 대장 등 미작성하고 미비치, 차량 운행일지 기록된 출장도 09:00~18:00로 기록하는 등 실제 운행 시간 미기재 등	운행일지 작성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기관 경고)
7	자격요건 부재 등 외부 전문가 참여·활용 불합리 (서울)	○스타트업 빌리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자격 기준이 부재하며, 특정 전문가 반복 참여로 인해 사업 공정성 및 사업 효과성 저해 우려	외부전문가 자격기준 및 외부전문가 참여횟수 제한 규정 등 마련 (통보)
8	창경센터 입주기업 관리 부실 (경남)	○본원 (창원)·서부센터 (진주) 입주 공간 (13개실)을 무상 지원하며, 입주기업은 입주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상 주소지를 센터로 이전하여야 하나, 1개 업체가 미이행했는데도 계약 해지 등 별도 조치하지 않음	센터 내 입주기업 지원사업의 공정성 및 형평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기관주의)
9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미흡 (경남)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지정·운영하지 않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양식 미제정) 미징구, 개인정보 파일 관리대장 미작성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 지정·운영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 업무개선방안 마련 (통보)